
대성에너지(주) 공급망 행동강령

2023. 11. 01.

1. 개요

1) 목적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본 공급망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본 행동강령은 전 협력사가 기업 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윤리,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행동강령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으며, 본 행동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현지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 현지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행동강령은 **대성에너지주식회사**와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는 모든 공급망에 적용된다. 또한,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강령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으며, **대성에너지주식회사** 또는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제 3의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점검 및 실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한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본 행동강령 및 향후 변동사항은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4)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협력사와 거래 계약 체결 시, 본 행동강령을 공유하며 협력사 대상 ESG 컨설팅과 실시, ESG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가 **대성에너지주식회사**와 거래 중 발생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익명은 의사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및 보호한다.

2. 인권 및 노동

1) 차별금지

협력사는 고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등에 있어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결혼여부, 임신, 성적성향,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직원의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으며,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한다. 임금은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협력사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수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무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현지 법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임직원에게는 1주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4)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하며,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 사전에 고지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며,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임직원이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 등의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15 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8 세 미만의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15 세 미만 아동의 근로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이나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직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안전 및 보건

1)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① 보건 및 안전허가

협력사는 필요한 보건 및 안전과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여, 유지하고 운영 및 보고/신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건강검진 제공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일반/특수)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 특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추가검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임직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휴게 공간 제공

협력사는 임직원의 과로를 방지하고자 충분한 면적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해당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기숙사 관리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 청결 및 안전과 같은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고 개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

협력사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안전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적/공학적인 제어, 설비 안전검사, 작업절차 개선, 작업공간 내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등을 마련한다. 이때 관련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는 임직원에게 공유 및 시정 조치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나 안전사고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급 상황을 식별하고 각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야 하며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및 경보기, 소방시설 등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사고 및 상해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 및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원인을 추적,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4. 환경

1) 환경경영체계 구축

협력사는 환경경영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운영 및 신고/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 기준에 따라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을 측정 및 관리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량을 최소화 해야 하며,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나 부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기타물질들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사용, 재활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 및 보관하는 장소와 소분 용기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5. 윤리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거래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 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된다.

2)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때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도 포함한다.

3) 공정 거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혹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 지역, 거래 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업체/협력업체/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회사 혹은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조부품 방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에 작업장 내에서 주기적으로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되거나 생산되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5) 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책임 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구매하는 원자재, 광물, 부품, 제품 등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윤리 위반,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석이나 탄탈륨, 텅스텐,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할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주변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았는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